

부산고등법원 2022. 11. 10 선고 2022나505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준민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안성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현

2. C

3. D

4. E

피고 2~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영준

변 론 종 결 2022. 10. 20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0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2. 8. 선고 2020가합10132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소외 F(G생)과 피고 B, C 사이에 부산 북구 H, 5층 소재 I PC방의 시설지분 55%에 관하여 2019. 2. 21.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129,217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B, C,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,217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소외 F(G생)과 피고 D 사이에 위 PC방의 시설지분 25%에 관하여 2019. 2. 21.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58,735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D,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,73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1)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1행의 “증인”을 “제1심 증인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당사자의 주장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7쪽 8행의 “따라서”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 『따라서 F과 피고 B,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분 제1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129,217,000원2)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, 피고 B, C, E은 공동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F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분 제2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

58,735,000원3)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, 피고 D, E은 공동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○ 제1심판결 7쪽 18행의 “따라서”부터 8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따라서 원고에게, 각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B, C, E은 공동하여 129,217,000원, 피고 D, E은 공동하여 58,735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3.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11쪽 4행의 “없다” 뒷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(원고는 피고들이 F과 함께 양도담보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』

○ 제1심판결 11쪽 9~10행의 “(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)”을 삭제한다.

4. 영업양수인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제9행의 “23호증의”를 “23, 30호증의”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원고가 이 법원에서 명확히 하거나 감축한 청구취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운삼, 판사 최은정, 판사 이재욱

1)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, C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, 피고 E에 대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였다.

2)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234,940,000원 중 위 피고들의 지분 비율인 55%에 해당하는

금액이다.

3)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234,940,000원 중 위 피고의 지분 비율인 25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